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0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통영시 E 대 109㎡와 F 대 155㎡에 관하여 2020. 6.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은 D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6. 2. 접수 제11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6. 8.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위 선박을 인도하라.
3. 피고 C와 D 사이에 통영시 G 대 165㎡에 관하여 2020.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는 D에게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6. 2. 접수 제

11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아래와 같이 2017. 3. 30.부터 2020.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88,7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D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총 163,995,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20. 6.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H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20. 12. 31. H조합에 148,813,7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로 인한 대지급금, 손해금 등이 991,746원으로 산정되었다.

3) D는 피고 B와 2020. 6. 1.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8.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와 2020. 6. 1. 주문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 및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어선원부상 소유권이전등락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에게 149,805,516원(= 148,813,770원 + 991,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D가 위 가.3)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주문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위와 같이 채무자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D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의 주문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D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6. 2. 접수 제11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6. 8.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D에게 주문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20. 6. 2. 접수 제 11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

